

검토보고서

■ 조례명

-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조례 제1510호 (1997. 7. 8)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제13조
(의견진술)

■ 개정사유

- 행정 절차법이 '9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의견 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검토결과(의견)

- 동 조례중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고자하는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도로점용료 및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 (의견진술) 조례 제11조 제1항에</p> <p><u>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u></p> <p><u>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u></p> <p><u>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u></p> <p><u>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u></p> <p><u>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시</u></p> <p><u>는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본다.</u></p>	<p>(삭 제)</p>